



Inter-Parliamentary Union  
For democracy. For everyon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의회와 인권

자체평가 도구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국제의회연맹 2023 / © Inter-Parliamentary Union 2023

본 간행물의 영어 원본은 국제의회연맹과 유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 공동으로 발간했다.

본 국문본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번역한 비공식 번역본으로 번역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며, 국제의회연맹의 동의를 받아 번역하고 발간하였다.

## 발간사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이 선언문의 내용은 인류의 이상적인 약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인권 조약으로 발전되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 각인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해입니다. 이런 즈음에 국제의 회연맹(IPU)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으로 발간한 ‘의회와 인권 - 자체평가도구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A self-assessment tool)’를 번역하여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동 발간된 이 책에는 의원의 인권 인식 확장을 위한 국제인권법과 그 체계에 대한 소개, 정부의 유엔 인권보장체계 대응 과정에서 의회의 참여 및 역할 제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외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 법률 제·개정 시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른 검토, 인권 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국회가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법률을 검토하고, 정부의 국제인권사무 이행을 감시하며,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번역하여 발간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회 및 지방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 및 발간에 동의해 주신 국제의회연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 두 환**

본 간행물의 영어 원본은 국제의회연맹과 유엔(UN)(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대신하여)이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 간행물에 사용된 명칭과 제시된 자료에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의 법적 지위나 개발 상태 또는 국경과 경계선의 획정에 관한 국제의회연맹(IPU) 또는 유엔 측의 어떠한 견해도 반영하지 않는다.

이 간행물은 국제의회연맹의 편집 양식과 명명 규칙에 따라 편집되었다.

국제의회연맹은 본 공동 간행물 제작을 위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제공한 재정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본 간행물에 포함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의회연맹과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는 합리적인 모든 예방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게재된 자료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배포된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과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독자에게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의회연맹이나 유엔은 이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국제의회연맹, 2023

국제의회연맹(IPU)은 이 도구에 포함된 자료의 사용, 복제 및 배포를 권장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및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견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국제의회연맹이나 유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본 간행물의 모든 부분을 개인적 및 비상업적 용도로 복제할 수 있다.

간행물 내용의 사용 혹은 전체 내용의 복제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원하는 경우 국제의회연맹([press@ipu.org](mailto:press@ipu.org))에 문의해야 한다.



# 목 차

서문	7
인권이란 무엇인가?	9
무엇이 인권을 인권으로 만드는가?	9
주요 인권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을 수 있나?	14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21
인권의무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인권체제는 무엇인가?	26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기능	32
국가 차원에서 의회의 역할	32
의회의 국제인권체제 참여	43
인권 자체평가를 위한 준비	46
목적과 용례	46
지도부의 지원	48
포용성과 주인 의식	48
자체평가 조직하기	49
자체평가 이후: 이행과 후속 조치	49
자체평가 점검표	50
자체평가 질문지	52
질문 1: 의회에서 인권의식 제고	52
질문 2: 인권 지원을 위한 법 제정	54

질문 3: 의회 감시 보장 _____	57
질문 4: 의회에서 인권의 주류화 _____	60
질문 5: 유엔인권체제에 의회의 참여 강화 _____	63
질문 6: 인권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간 상승효과 증진 _____	67
질문 7: 인권을 위한 재정 지원 확보 _____	69
질문 8: 대중 및 그 밖의 국가 인권 이해관계자와 협력 증진 _____	71
<b>참고문헌</b> _____	<b>74</b>



## 서문

인권 존중은 민주주의 사회를 굳건히 만드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다. 인권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권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 간 충돌, 국가 내부의 갈등, 인도주의적 위기, 권위주의의 확산,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기후 변화, 불평등 심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인권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이 의회가 인권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함을 강조한다.

의회는 인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의회는 인권에 민감한 법률을 채택하고 인권 조약의 비준을 지원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확고한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의회는 국내외 인권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직간접적으로 국제 인권 기준을 이행하기에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자체평가 도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인권체제가 의회 내부에서 어느 정도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 절차, 진행 및 구조에 어느 정도로 통합되었는지를 의회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내부 성찰을 통해 의회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교훈을 도출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는 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에서 인권을 주류화할 수 있도록 행동 방침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본 간행물은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인권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의회를 지원했던 광범위한 경험을 바

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회가 스스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의회연맹 의회 지원을 위한 공통 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이 간행물은 국제의회연맹과 유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공동 간행물인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26)을 보완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도구는 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의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아울러 이 도구는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회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이행할 때 국제인권체제의 권고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체평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의회의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회가 제안된 모든 질문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없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도구를 조정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게다가 자체평가의 실효성은 의회가 국제인권체제를 의회 업무에 통합하려는 의지와 헌신의 정도에 달려 있다. 또한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자체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체평가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의회는 포용적인 환경에서 함께 협력하여 인권 목표를 설정할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 그리고 인권이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권 관점은 모든 인간을 이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2020<sup>1</sup>

## 무엇이 인권을 인권으로 만드는가?

인권의 보편성, 양도 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 인권을 정의하기 위해 선언문, 헌장, 결의, 조약이 마련되었다. 의원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는 구성원이 인권 기준을 이해하고 국가가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1 OHCHR, “우리는 모두 함께한다: UNSG, 코로나19와 인권에 대한 정책 브리핑 제공(We are all in this together: UNSG delivers policy brief on COVID-19 and human rights),” 2020년 4월 23일

도표 1. 인권의 예<sup>2</sup>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권</li> <li>•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li> <li>• 노예, 노역 및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li> <li>•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li> <li>• 피구금자의 인간적 처우에 대한 권리</li> <li>• 이동의 자유</li> <li>•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li> <li>• 소급 형법 금지</li> <li>•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li> <li>• 사생활에 대한 권리</li> <li>•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li> <li>• 의견 및 표현의 자유</li> <li>• 전쟁의 선동 및 국가, 인종 또는 종교적 증오에 대한 선동의 금지</li> <li>• 집회의 자유</li> <li>• 결사의 자유</li> <li>• 혼인 및 가정을 형성할 권리</li> <li>• 정치에 참여할 권리 및 투표, 피선 및 공직에 접근할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권</li> <li>• 정당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li> <li>• 노조 결성과 가입의 권리</li> <li>•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li> <li>• 가정의 보호</li> <li>• 충분한 의식주, 식수 및 위생을 포함한 적정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li> <li>• 건강권</li> <li>• 교육권</li> <li>• 자결권</li> <li>• 발전권</li> <li>•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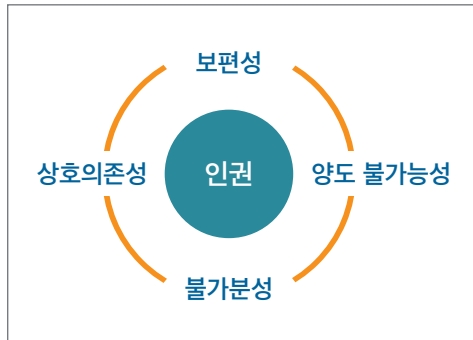
2 인권, 교차적 권리 및 인권 축에 대한 더 많은 예는 IPU와 OHCHR에서 공동 발간한 인권: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26) (제네바: IPU 및 OHCHR, 2016) 참조.

## 권리자와 의무자의 개념

인권은 개인(권리자)과 국가 및 그 밖의 권력 구조(의무자)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개인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와 그 외 기타 행위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혜자이다. 그러므로 책무성은 인권의 필수 원칙이 되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개개인을 중심으로 공공 정책을 마련하도록 보장하는 데 일조한다. 의회는 국가가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인권의 보편성과 양도 불가능성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권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성별, 사회적 또는 민족적 출신, 국적, 성적지향, 장애 또는 기타 구별되는 특징과 관계없이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모



든 국가와 민족이 인권을 인정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권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와 같이 국제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인권은 한 가지 권리의 실현이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인 불가분한 관계인 체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함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부 인권이 다른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개념에 반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생명권은 식량권과 적정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가 존중됨을 전제로 한다. 기본적 교육에 대한 권리가 거부되면 사법 및 공적 생활의 참여에 대한 접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는 상호 보완적이며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완전함에 동일하게 중요하다. 또한 모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국제사회는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재확인해 왔다.

###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인권침해 또한 그러하다.

한 가지 권리가 침해되면 다른 권리도 잇달아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권침해도 상호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University of Fribourg)의 학제 간 윤리 및 인권 연구소(Interdisciplinary Institute of Ethics and Human Rights) 연구자들은 “포괄적 오염(comprehensive contamination)”<sup>3</sup>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즉, 한 가지 권리가 침해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처벌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리침해 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

3 요한 부샤르드, 파트리스 메이어-비쉬, “인권의 교차성과 상호의존성: 같은가, 다른가?”, *평등권 리뷰*, 16권([Intersectiona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Same or Different?](#)), *The Equal Rights Review*, vol. 16(2016).

## 평등과 차별금지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은 인권의 핵심이며, 다양한 이유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인권은 특별한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권은 사회 전체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소수 종교 집단,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 집단,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 선주민, 장애인, 이주자, 노인,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및 간성인(LGBTQ+)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 하겠다는 약속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추진력이 되었다. 법률, 정책 및 관행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기타 견해, 국가,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 구성원, 재산, 출생, 연령, 장애, 성적지향, 사회적 지위나 기타 지위 등 모든 이유에 따른 차별을 효과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 주요 인권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을 수 있나?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나는 이 선언문에 명시된 인권의 이상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건설적인 사상 중 하나이자 가장 성공적인 사상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 2018년 <sup>4</sup>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자행된 잔혹 행위로 인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인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신성한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사회는 함께 모여 유엔 헌장에 사용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최초로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문서를 마련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초안을 작성하고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로서 작성되지 않았고 이후에 그러한 문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결국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집에서 가까운 작은 장소에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깝고 매우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엘리너 루스벨트, 세계인권선언 초안작성 위원회 위원장, 1958년 <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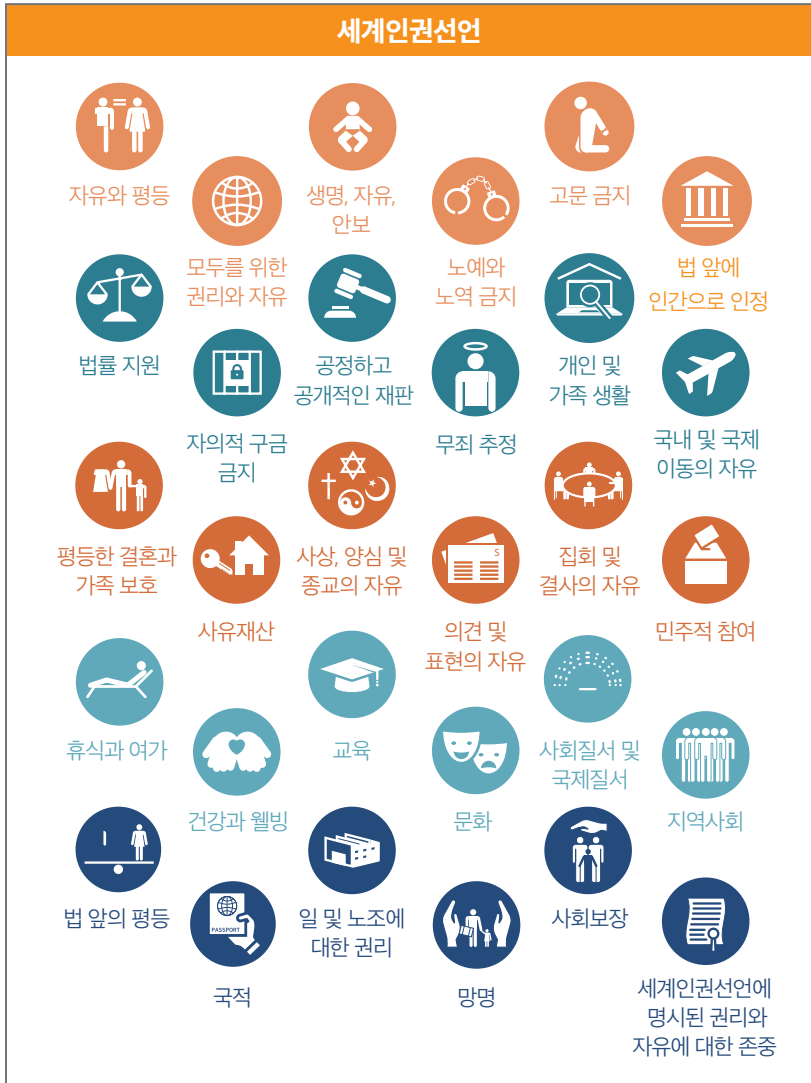
---

4 OHCHR,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 성명\(7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ment by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ichelle Bachelet\)”](#), 2018년 12월 6일. 또한 OHCHR,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참조.

5 예를 들어 유엔, [“교육 지침 및 자료: 인권\(Teaching guide and resources: Human Rights\)”](#) 참조.



## 도표 2. 세계인권선언



출처: 이 그림은 TERMCAT, Centre de Terminologia(2017)에서 개발한 [세계인권선언의 대화형 인포그래픽 원본](#)을 허가를 받고 수정한 것이다.

##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은 여러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문서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헌장에서도 사용된 "인권"이란 용어에 대해 최초로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다자조약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두 규약 문안의 합의는 거의 2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1976년에 발효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두 규약을 통칭하여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른다.

이 두 규약을 보완하기 위해 8개의 다른 국제인권조약이 마련되어 인종차별, 고문 등 특정 현상을 다루거나 여성,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조약에서 보호하는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충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여러 지역 기구에서 인권 조약을 채택하고 있다. 그 예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유럽인권협약으로 더 많이 알려짐)<sup>6</sup>,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sup>7</sup>,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sup>8</sup>, 아랍인권헌장(Arab Charter on Human Rights)<sup>9</sup>이 있다. 이러한 협약의 이행은 지역인권체제를 통해 모니터링된다.

---

6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50\).](#)

7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8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9 [아랍인권헌장\(Arab Charter on Human Rights\) \(200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모든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권리에는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민주 정부에서 핵심이 되는 공무 수행에 참여할 권리 및 관련 기본적 자유가 포함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의원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원에게 더욱 중요하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하고 특정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할 의무가 있다. 두개의 선택의정서<sup>10</sup>는 이 규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제1선택의정서에 따라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개인은 규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조약감시기구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삼는다.<sup>11</sup>

10 선택의정서는 기존 조약과 관련된 법적 문서로서 실질적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거나 진정 처리 절차 등의 보호 체계를 제공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택의정서는 일반적으로 모조약에 가입된 당사국만 비준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국가가 모조약의 당사국이더라도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11 ICCPR 제1선택의정서는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되었으며,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ICCPR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에 채택되고 1991년에 발효되었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인권장전의 두 번째 축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두려움과 결핍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sup>12</sup> 이 규약은 당사국이 각국의 경제적 자원을 고려하고 국제 최저 기준을 준수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달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국은 국가 차원에서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충족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할 적극적(positive) 의무가 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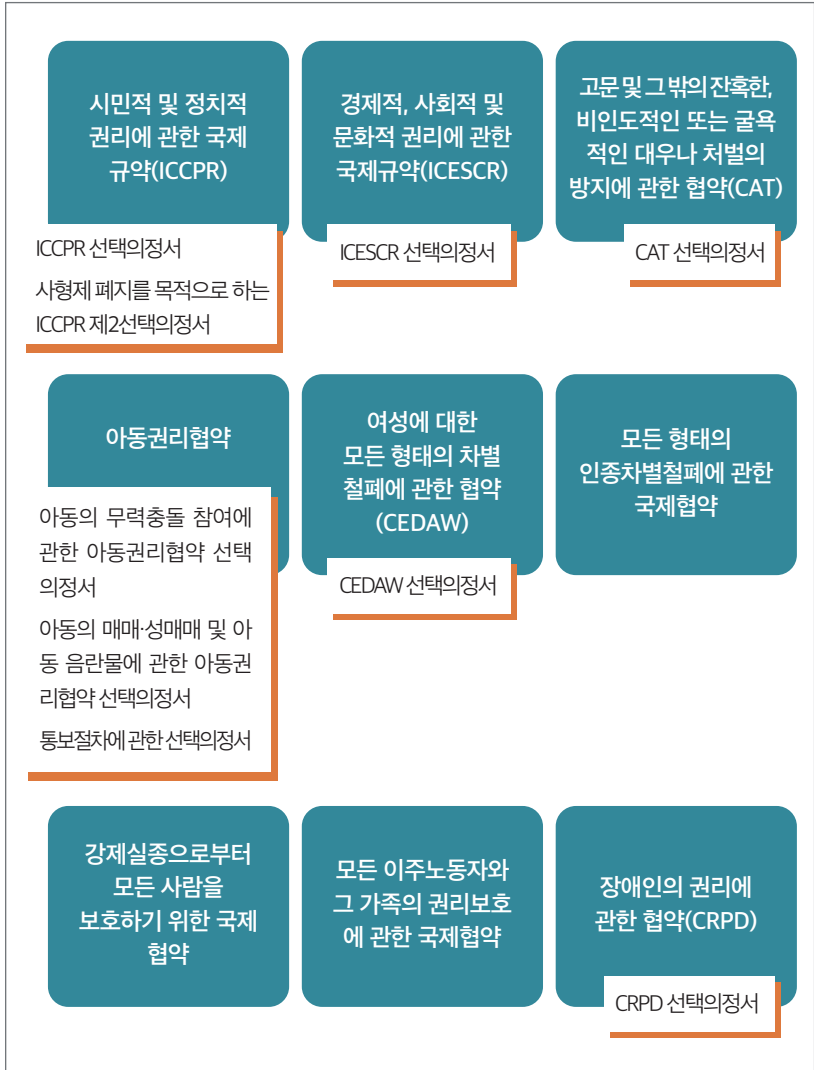
국제인권장전은 다수의 더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문서들로 보완되어 왔다. 이들 문서는 실질적인 인권 규범을 포함하며 진정, 신고 및 조사 절차, 기타 사항에 대한 체제를 수립한다. 두 국제규약과 그 선택의정서는 일반적으로 '핵심 인권조약'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문서를 구성한다.

---

12 ICESCR의 제6, 9, 11, 13조 참조.

13 ICESCR 선택의정서(OP-ICESCR)는 2008년에 채택되고 2013년에 발효되었다.

### 도표 3. 유엔 인권 조약



## 점진적 실현의 개념

점진적 실현의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당사국이 즉시, 그리고 장래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실현할 의무를 뜻한다. ‘가용 자원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권리 실현이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지체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건강권이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자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자국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제 최저 기준을 준수하여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 보건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또한 점진적 실현의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 국민에게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는 퇴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를 강조한다. 자원이 부족하면 이러한 권리 실현이 지체될 수 있으며, 권리 실현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달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OHCHR [해설집 33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 뉴욕 및 제네바: 유엔, 200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3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참조.

##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명백한 연관성: 인권은 2030 의제의 보편적 실현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국제인권기준에 확고하게 근거하고 있다. 또한 2030 의제는 평등, 차별금지, 포용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인권의 실현을 지향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포괄하도록 수립되었다.<sup>14</sup> 몇몇 세부목표는 목표에 상응하는 인권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상당 부분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목표’라고도 알려진 열 여섯 번째 목표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안전, 정의에 대한 접근, 기본적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sup>15</sup>

14 IPU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U, [의회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자체평가 도구\(Parlia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elf-assessment toolkit\)](#) (제네바: IPU, 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OHCHR,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Human Right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제네바: OHCHR, 2015).

## 도표 4.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 및 관련 인권<sup>16</sup>

###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이러한 목표에는 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인신매매 근절, 모두를 위한 법의 지배와 정의 증진, 불법적인 자금 및 무기 흐름, 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 효과적인 제도 개발, 모든 수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모두에게 부여되는 법적 지위가 포함된다.

-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UDHR 제3조, ICCPR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ICPED 제1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포함 [UDHR 제5조, ICCPR 제7조, CAT 제2조, CRC 제37조제(a)항]
-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또는 착취로부터 아동 보호  
[CRC 제19조, 제37조제(a)항], 인신매매 포함(CRC 제34조~제36조, CRC-OP1)]
- 정의와 적법한 절차에 접근할 권리  
[UDHR 제8조, 제10조, ICCPR 제2(3)조, 제14조~제15조, CEDAW 제2조제(c)항]
-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UDHR 제6조, ICCPR 제16조, CRPD 제12조]
- 정치에 참여할 권리  
[UDHR 제21조, ICCPR 제25조]
- 정보에 접근할 권리  
[UDHR 제19조, ICCPR 제19조제2항]

16 OHCHR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와 관련된 인권을 연결한 예시를 표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도표 5.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보충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접근 방식

2030 의제는 회원국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달성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점진적 이행은 각국의 자원과 효과적인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2030 의제는 의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의회는 주요 예산안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돕는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 의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법률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2030 의제는 의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한다.

이미 지속가능발전목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한 의회도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짐바브웨 의회는 2030 의제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위원회를 확대했다. 확대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sup>17</sup>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위원회는 유엔에 제출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정기 보고서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sup>18</sup>, "국가 정책 체계/전략/계획 및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데 의회가 더 긴밀하게 관여하여 이행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류화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9</sup>

---

17 짐바브웨 정부, [짐바브웨의 제2차 자발적 국가보고\(VNR\) \(하라레: 짐바브웨 정부, 2021\), p. 47.](#)

18 동일문서

19 동일문서

###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데이터베이스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는 대화형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 인권 데이터 탐색기를 사용하면 국제인권보장체계의 67개 모니터링 체제에서 제공하는 15만 건의 권고 및 관찰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거의 60%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바로 연결되므로 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sup>20</sup>

---

20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과 2030 의제 사이의 연관성 찾기\(Making the link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2030 Agenda\)](#)”.

## 인권의무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인권체제는 무엇인가?

국가는 국제인권조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국의 법 체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그 밖의 국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국내 이행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체제에 따른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및 특별절차

인권이사회는 2006년 총회 결의 60/251에 따라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검토할 권한을 부여받아 설립되었으며, 인권위원회를 대체했다. 인권이사회는 선출된 47개의 유엔 회원국<sup>21</sup>으로 구성되며 매년 최소 3회(2~3월, 6~7월, 9~10월) 정기회기를 개최한다. 인권이사회는 회원국의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인권침해 및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회기를 개최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특별절차, 진정절차 등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 체제를 갖추고 있다.<sup>22</sup>

인권이사회는 인권위원회 실무 그룹과 그 밖의 체제를 이어받았으며, 발전권, 선주민 권리,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이행, 민간 군대 및 안보 관련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 체제, 평화에 대한 권리, 농부와 그 외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등 주제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였다. 인권이사회의 또 다른 부속 기구로는 소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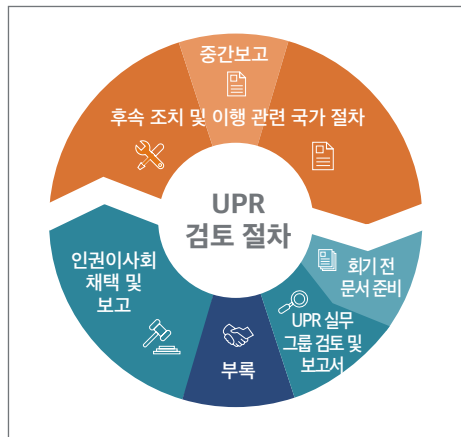
21 선출된 회원국의 최초 임기는 3년이며 두 번을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다.

22 A/HRC/RES/5/1

문제에 대한 포럼, 사회 포럼, 기업과 인권 포럼 및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 포럼이 있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진실규명 임무와 조사위원회와 같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는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체제로 도입되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절차인 이 협력 체제에 따라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인권의무와 약속을 이행한 성과를 다른 국가가 평가하게 되며, 그 궁극적 목적은 현장에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매



4년 6개월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이 각국의 상황을 검토한다. 즉,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절차이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바람직하게는 광범위한 국가적 협의 절차를 거쳐 의회와 기타 국가 이해관계자들이 작성에 참여한 국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검토 대상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외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가인권기구(NHRI)<sup>23</sup>와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와 비정부기구(NGO)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하나의 보고서와, 조약 감시 기구 및 특별절차 수임자(독립전문가)

23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28쪽 참조.

의 견해와 권고, 유엔 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보고서 등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절차는 국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 의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절차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공식 인정

2017년 6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 35/29를 채택하여 “국제인권체제에 따른 권고, 특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체계하에서 회원국이 찬성하는 권고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적 약속을 국가 정책 및 법률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sup>24</sup> 또한 결의 35/29는 각국이 국가 체계에 따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sup>25</sup> 의회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장려한다. 이 결의는 의회를 전략적 동반자이자 “국가보고서에 대한 협의 절차와 회원국이 지지하는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로 규정한다.<sup>26</sup>

## 특별절차

특별절차<sup>27</sup>는 특정 주제별 사안이나 전 세계의 국가 상황에 대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인권이사회의 체제다. 특별절차 수임자는 개인(특별보고관, 대표, 독립 전문가 등) 또는 실무그룹일 수 있다. 특별절차 수임자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24 A/HRC/RES/35/29

25 동일문서

26 동일문서

27 자세한 내용은 OHCHR,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참조.

저명한 전문가로 인권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이들은 어떠한 정부나 조직에도 소속하지 않으며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다.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조직의 핵심 요소이며 특정 집단의 권리와 국가별 상황에 따른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유형의 인권을 다룬다. 특별절차 수임자는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며, 대부분은 총회에도 보고한다.

특별절차 수임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정부의 초청 또는 수임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 승인하에) 국가 방문을 수행한다.
- 침해 또는 위반 혐의에 대하여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통보를 보냄으로써 개별적 사안 및 광범위하고 구조적 성격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한다.
- 주제별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협의를 소집한다.
- 국제인권기준의 개발에 기여한다.
- 옹호 활동에 참여하고 기술 협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 유엔인권조약기구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은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감시되며, 이를 조약감시기구 또는 조약기구라고 한다.<sup>28</sup> 조약기구는 관련 조약의 당사국이 조약기구에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현재 10개의 조약기구가 있다.<sup>29</sup> 이 중에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가 포함된다.<sup>30</sup> 이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 장소를 방문한다. 국가 보고 절차는 유일하게 모든 핵심 인권조약(소위원회 제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강제 절차다. 당사국은 각 조약기구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정기 보고서와, 경우에 따라 해당 조약기구가 요청하는 비상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보고서가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회를 포함한 타 국가기관과 국가인권기구(NHRI), 옴부즈맨, 관련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가 보고서 작성 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8 유엔 인권보장체계는 보통 현장 기반 기구와 조약 기반 기구를 구분한다. 조약 기반 기구는 특정 인권 조약으로부터 설립된다. 현장 기반 기구는 유엔 현장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설립되며, 전 인권위원회의 뒤를 이은 인권이사회 및 특별절차가 현장 기반 기구에 포함된다.

29 자세한 정보와 유엔 조약 기구의 전체 목록은 OHCHR, “[조약 기구\(Treaty Bodies\)](#)” 참조.

3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따라 2002년 6월 22일에 설립되었다.



조약기구는 국가 대표와 대중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국가보고서를 분석하고 보고서에 대해 논의한다. 각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조약 기구는 최종견해와 권고를 채택한다. 국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고 권고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sup>31</sup>

조약 기구(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강제실종방지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제출한 진정이나 통보를 고려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경우, 개인통보 체제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위원회가 개인통보의 심리 적격을 판단하면, 해당 사안은 본안 판단과 함께, 적용가능한 조약의 조항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논거를 명시한다.

---

31 OHCHR은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조약기구가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유형의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HCHR, [“유엔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UN Treaty Body Database\)”](#) 참조.

#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기능

## 국가 차원에서 의회의 역할

의회는 국가인권보호체계의 초석이다. 의회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국제 및 지역인권규범이 준수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의 지배와 사법부를 포함한 기관의 토대를 마련한다.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정부가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증진하는 일차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의회는 입법과 감독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인권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예산도 승인한다.

의회가 인권 수호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의회 직원이 관련 국제인권법 체계와 비상시 의회의 역할을 포함한 의회의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회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 인권조약 비준

인권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함으로써<sup>32</sup> 국가는 국제사회와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인권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비준 절차는 행정부가 인권조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는 비준을 승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준이 되면, 조약에서 보장하는 국제인권규범이 비준 국가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약의 이행 상황을 국제 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체제가 형성된다. 법체계가 이원화된 국가에서는 추가 입

---

32 각 국가별 비준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HCHR, [“비준 현황 대화형 대시보드”](#) 참조.

법을 통해서만 조약이 국내 법제의 일부로 편입된다. 또한 의회는 행정부가 자국이 아직 당사국이 아닌 조약을 비준하고, 비준된 조약에 대한 부당한 유보를 철회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수권 법률(enabling legislation)의 채택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거나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이러한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이다. 하지만 조약이 실제로 현실화되도록 하려면 조약의 조항이 국가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의회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sup>33</sup>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데 기여한다. 국내화(domestication) 과정에는 의회가 기존 법률을 검토하여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 청원이 인권 관점에서 검토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의회 업무에서 인권을 주류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

33 국제조약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입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U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97쪽 참조.

###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회 활동<sup>34</sup>

- 쿠웨이트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명시한 의무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5년 쿠웨이트 여성에게 처음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었다. 2020년 쿠웨이트 의회는 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0년 9월에 발효되었다.<sup>35</sup>
- 2019년 이탈리아 상원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코디체 로쏘(Codice Rosso, 레드 코드)로 알려진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무엇보다도 범죄 신고 후 3일 이내에 검사의 공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및 젠더기반 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 법에는 강제 결혼, 임신 공격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음란한 이미지나 동영상의 불법 배포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sup>36</sup>

34 의회에서 젠더 감수성을 달성하기 위한 IPU의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U, [의회 의 젠더 감수성 평가: 자체평가 도구\(Evaluating the gender sensitivity of parliaments: A self-assessment toolkit\)](#)(제네바: IPU, 2016) 참조.

35 이 데이터는 2010년과 2015년 UPR 주기 동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쿠웨이트 국가 보고서와 CEDAW(2021)에 제출된 쿠웨이트의 제6차 정기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36 A/HRC/WG.6/34/ITA/1, 45항.

## 예산 승인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인권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할당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우선 과제를 수립할 때 의회는 인권 이행에 충분한 자금이 편성되게 해야 한다. 이후 의회는 정부 지출을 감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인권 분야에서 미비한 성과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의회 감시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과 행동을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의회가 감시 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인권을 감시할 의회내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에 명확하게 규정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각료, 공무원 및 그 밖의 행정부 관료에게 서면 질문을 발송한다.
-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 국가인권기구(NHRI),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기타 국가인권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난민수용소 등)로 현장 방문을 수행한다.
- 국제인권체제의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감시 업무를 구축한다.

2018년에 우즈베키스탄 최고의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유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의회 감시 체제를 개발했다. 우즈베키스탄 최고의회는 유엔 인권 체제와 협력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최초로 의회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원은 각료, 공무원 및 기타 행정부 관료에게 서면질문, 구두질문 또는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이와 같은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정부의 조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 의원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특히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국제의회연맹은 이 임무를 의원 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에 위임했으며, 이 위원회는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 혐의 사례를 조사한다.<sup>37</sup>

## 지역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이행

의원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 특별절차 수임자 및 지역인권감시기구에서 제시하는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권 의무 준수를 위한 행정 조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은 이러한 권고를 근거로 들어서 국가가 의무를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폐지, 개정 또는 채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개인통보와 관련하여 인권조약기구에서 채택한 견해와 결정 및 자국이 관할권을 인정한 지역의 인권재판

37 자세한 내용은 국제의회연맹(IPU), “[의원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 참조.

소 판결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도록 권장된다. 인권 수호자인 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엔인권체제에 제출되는 국가보고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 대표단에 의회 인권위원회 구성원을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절차가 끝날 때 의원은 채택된 권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 유엔 인권체제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대표단에 의원의 참여

몇몇 의회에서는 유엔 인권체제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대표단에 의원들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행이 규범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그러한 과정이 더욱 더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파키스탄 의원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위원회에 국가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 2018년 멕시코 연방의회 의원이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위원회에 국가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 2019년 세르비아 의원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국가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 2020년 이탈리아 상원 및 하원 의원이 인권이사회 제43차 회기에 참여했으며,<sup>38</sup> 우즈베키스탄 최고의회 의원이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위원회에 국가대표단으로 참여했다.

38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위원회 의장(상원 의원) 및 인권상임위원회 의장(하원 의원)

##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회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을 전담으로 하는 의회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인권을 실현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이다. 또한 의회 의제에서 인권이 상시로 논의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의회 인권기구는 법안과 법률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의회 절차, 진행 및 구조에서 인권을 주류화하며, 정부의 이행에서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이사회는 결의 35/29를 채택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회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포함한 의회 업무 간의 상승 효과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의회, 회원국, 국가인권기구(NHRI)에 보낸 설문지의 응답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업무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의회의 기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sup>39</sup> 이 보고서는 의회 인권위원회의 중요성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모든 단계, 특히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서 의회 인권위원회가 맡은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보고서의 부록에는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 초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초안은 의회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39 A/HRC/38/25



### 의회 인권위원회의 주목할 만한 조치

- 캐나다 상원 상임인권위원회는 특정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여러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캐나다 법률에 미치는 영향(2004~2006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사이버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2011~2012년)과 수감자 상황에 미치는 영향(2017~2019년)이 포함된다.
- 2016년, 우간다 의회 인권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법안, 청원, 정책 성명서, 예산 및 기타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인권 점검표를 개발했다. 의회의 모든 위원회는 인권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 및 기타 사업을 분석할 때 이 점검표를 사용한다.

## 법률 초안 작성에 시민사회의 참여 촉진

의회와 시민사회는 공동 작업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 이를 위해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하면서도 여러 방식으로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의회와 의회 위원회는 대중에게 절차를 공개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증언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다. 또한 의회가 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자신의 전문지식과 조언으로 의원과 직원을 도울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기여는 의회의 법제 연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특히 중요하다. 더욱이, 시민사회가 의회 논의에 조언하는 것은 의견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로운 관점이 개발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의회의 지원 및 협력 사례

2017년 11월, 조지아 의회 의원과 종교단체, 외교단 및 고등교육 기관은 정부 구성원과 함께 조지아에서 종교적 관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평화를 위한 종교 간 대화 콘퍼런스(Interreligious Dialogue for Peace conference)에 함께 모였다. 이후 두 차례 더 콘퍼런스가 열렸으며, 2019년에는 조지아의 유럽 가입의 길에서 종교(Religions on the path of Georgia's European integration)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2019년 11월, 크로아티아 의회 의원은 국제 여성폭력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의회의 젠더평등위원회가 조직한 여성폭력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달, 시민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1월 의회 의원들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제안들이 채택되었다.<sup>40</sup>

##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

국가인권기구는 정부 및/또는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구로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위임받는다. 인권기구는 다양한 이름(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퍼슨, 국선번호인 등), 법적 지위, 구성, 구조, 기능, 권한을 갖는 다양한 기관을 아우른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회원으로서, 인권기구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sup>41</sup> 독립성, 대중에 대한 접근성, 폭넓은 인권 권한, 재정적 적절성, 선발과 임명 절차의 포괄성과 투명성

40 A/HRC/WG.6/36/HRV/1

41 A/RES/48/134

에 관해 파리원칙을 준수한다는 평가를 받은 인권기구는 “A 등급”을 받고 부분적으로 준수한다고 평가받은 인권기구는 “B 등급”을 받는다(국가인권기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간한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112쪽 참조). 2012년 베오그라드원칙(Belgrade Principle)<sup>42</sup>은 국가인권기구와 의회 간 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sup>43</sup>

국가인권기구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권고, 제안 및 보고서를 정부 혹은 의회에 제출할 역량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국내법과 관행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진정을 접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국제인권법규의 비준과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보고 절차에 기여하여야 하며, 정보와 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유엔, 종교 기관, 해외 국가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42 베오그라드 세미나는 OHCHR, 국가인권기구의 협력위원회, 세르비아공화국의 의회와 인권기구인 시민의 보호자(Protector of Citizens)가 세르비아의 유엔 국가 팀의 지원을 받아 조직하였다.

43 국가인권기구 및 이들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OHCHR의 “[유엔인권 및 국가인권기구\(UN Human Rights and NHRIs\)](#)” 참조한다.

### 의회와 국가인권기구 간 효과적인 협력

2019년 12월, 모로코 국가인권위원회(CNDH)와 모로코 의회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권고에 대한 의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권고 이행 감시에 있어 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sup>44</sup> 이 워크숍은 두 기관 간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sup>45</sup> 인권 기반의 접근을 통해 두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고 인권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기준을 검토 중인 국제인권조약의 영향에 관해 모로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의원을 위한 인권 역량 강화

인권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의회에 수년간 기술 협력을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의원은 국제인권체제의 활동에 익숙해지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취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정치적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의원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의회의 인권 위원회 및 다른 모든 유관 위원회의 구성원도 참여하여야 한다. 의원이 역량 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어 의회 지도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44 밀룬 코타리,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나타난 모범사례에 관한 연구(Study on emerging Good Practices fro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제네바,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2021)

45 2021년 6월 10일, 모로코 의회와 CNDH 간 양해각서는 개정되었으며 국가인권기구와 의회 간 관계에 관한 파리원칙과 베오그라드원칙에 부합하도록 CNDH의 독립적 행동이 반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모로코 왕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안 및 CNDH와 하원의회 간 양해각서의 갱신' 참조.

## 의회의 국제인권체제 참여

인권이사회 결의 35/29는 의회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모든 국제 및 지역인권체제에 관여함으로써,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 국제인권체제 활동에 의회의 공헌이 필수적인 이유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의회의 행동은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에서 채택된 권고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부가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권고 이행에 있어 필요한 인권에 민감한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이행의 격차를 메우는데 있어 독자적인 위치를 갖는다.<sup>46</sup>

####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의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의회 및 국제의회연맹과의 협력에 관한 정책을 채택해 온 유일한 유엔 조약기구다.<sup>47</sup> 200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검토 대상인 모든 국가에 대한 최종견해에 ‘의회’에 관한 표준 항을 체계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보고 과정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의회 참여의 중요성을 당사국에 인지시키기 위함이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의 조항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적어도 4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의회연맹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함께 의회가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견해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46 A/HRC/38/25, 28항

47 OHCHR, ‘[국가 의회와 여성차별철폐협약](#)’

## 국제인권체제의 3단계 보고 절차에서 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 국가보고서 논의 또는 초안 작성 과정에 의회의 참여

결의 35/29에서, 인권이사회는 국가가 국가보고서 협의 절차에 관련 이해관계자로 의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의회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독려했다. 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국제인권체제에 제출할 국가보고서를 논의할 수 있으며 특정 인권 현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참여를 나타내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20년 2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따라 제출된 크로아티아의 3차 보고서는 모든 정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크로아티아 의회가 참여한 포괄적 절차의 결과물이었다. 더욱이, 유엔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감시하고 검토하기 위해 의회 산하에 설립된 인권 및 국가 소수자 권리 위원회 역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 이행에 참여하고 있다.

### 국제인권체제에 국가보고서 제출

의원 대표부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대표단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국가대표단에 참여함으로써, 의원은 최소한 국제인권체제가 제기한 문제와 그에 대한 국가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직접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원이 국가보고서 제출과 이후의 유엔인권체제와의 교류에도 더 직접적으로, 때로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국제인권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

국제인권체제의 성공은 크게는 국제인권체제의 권고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유엔인권체제가 마련한 권고를 이행하고 국가의 인권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조사하는데 있어 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014년 대한민국 의회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법안의 이름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제5항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부 보고서는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에 제출하는 3단계 보고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2018년 5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했다. 당월 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의원에게 권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권고는 2018년 9월 채택되어 이후 검토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최고의회에 공유되었다. 또한 의회는 권고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 인권 자체평가를 위한 준비

## 목적과 용례

국제의회연맹의 경험에 따르면, 의회는 잘 짜인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와 과제를 파악하고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상황과 관련 당사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례로, 의회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의회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의원이 핵심 인권 현안을 논의하거나 인권 관점으로 기존 법률을 검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도구의 구체적인 사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 국제인권규범, 체제, 그 권고가 의회에서 완전히 이해되고 의회 절차, 진행 및 구조에 통합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 모범사례, 부족한 점 및 교훈을 파악한다.
- 의회가 그 업무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인권의 주류화를 위한 행동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처음 자체평가를 하는 경우,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과 병용하여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sup>48</sup> 의회는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더 자체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시의적절한 때에, 의원 개개인, 집단, 의회 위원회나 의회의 고위 직원의 주도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를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야 한다.

자체평가의 효과는 인권인식을 강화하고, 인권에 민감한 법안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을 폐지하며,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인권을 주류로 편입하고, 유엔 인권 보고 절차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가 취하는 조치의 측면에서 얻어지는 성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도구에서 제공되는 질문을 통해 의회는 의회의 우선순위와 업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는 각 자체평가 활동에서 하나 이상의 질문을 선택해 검토할 수 있으며 또는 특정 영역에서 거둔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모범사례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의회가 이 도구를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

48 인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IPU와 OHCHR의 ‘국회의원을 위한 핸드북’ 참조.

## 지도부의 지원

자체평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를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 목적은 의회가 해결할 과제와 기회를 파악하고 인권 증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내부 성찰 활동은 의회 지도부가 평가 과정을 지원하고 지지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자발적인 자체평가 활동 수행으로 의회는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자체평가 활동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의원과 의회 직원이며, 특히 의회 인권위원회 구성원에 초점을 둔다. 평가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는 현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업무영역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우선순위를 정해 입법, 대표성, 감시 등 의회의 핵심 기능 전반에 걸쳐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 포용성과 주인의식

자체평가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그 당위성이 결정되는 집단적인 활동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과 야당 의원, 남성과 여성 의원, 중진 및 신진 의원, 소수를 대표하는 이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양한 집단의 참여는 건설적인 평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평가 활동 중에 검토된 몇몇 문제에 다양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고위 의회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유익함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하다. 의회는 특정 맥락에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 시민사회, 학계, 언론 대표, 여성 집단, 청년 및 풀뿌리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체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외부 참여자의 경험과 비전은 평가 과정을 다채롭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회는 이런 접근 방법의 채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자체평가 조직하기

자체평가로 성과를 얻는 것은 크게는 충실한 준비, 이용가능한 자원과 최고 수준의 정치적 지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자체평가는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의회에서 권한이 가장 큰 지도부 산하의 집단이 운영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 자체평가 이후: 이행과 후속 조치

자체평가를 하면서 파악된 문제와 후속 권고는 이행과 후속 조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당국과 기타 이해관계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의회가 각각의 자체평가 활동에서 나온 권고를 이행하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이행 계획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에 관해 행정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및 개발 협력자와 함께 협력할 것이 장려된다. 또한 의회는 향후 자체평가에 참여하기 전에 이전의 자체평가에서 나온 권고가 논의 및/또는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자체평가 점검표

## 의회의 자체평가 활동을 위한 준비

---

<b>지도부의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회 지도부는 인권 자체평가를 지지하고 있는가?</li></ul>
<b>시작</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누가 또는 어느 기구가 평가 활동을 시작하고 조직할 것인가?</li></ul>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평가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li><li>• 의원 및 기타 참여자간 평가 활동의 유용성과 목표에 관한 공통의 이해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가?</li></ul>
<b>조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누가 평가 활동을 위한 행정 준비를 할 것인가?</li><li>• 자체평가를 수행할 충분한 자원이 있는가?</li><li>• 자체평가가 시작되기에 앞서 입문 세미나가 개최되는가?</li></ul>
<b>참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에 참여하는 이는 누구인가?</li><li>• 참여할 의원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모두 참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규모 의원만 참여하는가?</li><li>• 의회 직원은 참여해야 하는가?</li><li>• 평가 활동은 의회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가?</li><li>• 외부 이해관계자는 적극적인 기여자 또는 직무 전문가로서 참여하는가? 이들을 선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li></ul>
<b>촉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체평가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평가활동을 돕는 촉진자가 있는가?</li><li>• 외부 촉진자가 있는가? 있다면 외부 촉진을 조직하는 이는 누구인가?</li><li>• 촉진자를 확인하고 의견을 같이 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어떤 종류인가?</li><li>• 촉진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가, 아니면 협력단체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li></ul>

---

<p><b>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는 언제 수행되는가?</li> <li>• 자체평가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일수와 횟수)?</li> </ul>
<p><b>자료 출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아래의 보고서가 존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가능한 기존 정부 보고서</li> <li>- 부문별 위원회 등에서 발간한 기존 의회 보고서</li> <li>- 국제 혹은 지역인권기구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li> <li>-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에서 발간한 보고서</li> </ul> </li> </ul>
<p><b>평가 활동의 기록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활동에 대한 보고관이 필요한가?</li> </ul>
<p><b>평가 결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또는 행동 계획(혹은 둘 다), 핵심 이해관계자 명단, 기존 국가인권체제와의 협력 등 평가 활동의 결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li> <li>• 이러한 결과물 제작의 주무부서는 어디인가(예를 들면, 의회사무처, 위원회)?</li> </ul>
<p><b>후속 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되는 후속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li> <li>• 후속 조치 담당자는 누가 될 것인가?</li> <li>• 후속 조치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li> </ul>

## 자체평가 질문지

다음 질문은 의원이 국가적 상황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다루도록 보장하는 한편 준비 상태를 되돌아보고 우선순위를 파악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지침으로 제공되며, 여러 의회에서 열린 토론과 인권에 관한 설문 응답에 기초한다.

각 질문 모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부의 질문은 주로 사실 정보에 기초하며 2부의 논의를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2부의 논의는 향후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가 모든 질문을 다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의회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다.

### 질문 1: 의회에서 인권의식 제고

인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정기적으로 핵심 인권 원칙과 조약에 관한 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회 도서관에서 인권 관련 문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든 의원과 의회 직원이 인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부: 기준선 파악하기

- 초선 및 현직 의원은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체제를 포함하여 인권을 잘 아는가?
- 초선 의원은 선거 후 국제인권조약 및 체제를 포함하여 인권을 접하는가?
- 의원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인권 역량 강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 의원은 의회 도서관 등을 통해 핵심 국제인권체제 및 그 권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단이 있는가?
- 의회 직원, 특히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직원은 (국제인권조약 및 체제를 포함하여) 인권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가?

### 지난 12개월간:

- 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는가? 그렇다면, 몇 번 개최되었으며 참여한 의원과 (남녀) 의회직원은 몇 명이었는가?

## 2부: 노력의 영향 돌아보기

- 의원은 인권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자료와 학습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의원은 의회 아카데미에 참여하거나 교육과정에 인권이 포함되는 평생교육을 또 다른 형태로 받은 바 있는가?
- 의회는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혹은 인권에 전문성을 지닌 다른 권위 있는 기관에 인권과 국제인권체제의 업무에 관한 정보나 연수를 의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 의회는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도서관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의회는 검토 결과에 따라 타당하다고 생각될 만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는가?

## 질문 2: 인권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인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의회는 의회의 중심 역할들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인권조약 및 원칙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여러 국가에서 의회는 인권조약을 비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특히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법질서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국가에서, 의회는 국제인권조약의 조항이 국내법으로 충분히 전환되도록 할 책임을 진다. 또한 의회는 법률이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의회 절차를 수립하는 등 인권에 민감한 법률을 장려함으로써 인권의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는 의회가 관련 국제 및 지역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법률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힘, 시민사회의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체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리를 마련하도록 주도할 수 있다.

### 1부: 기준선 파악하기

- 의회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검토하거나 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 의회는 정부가 9개 국제인권조약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 또는 승인해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그렇다면, 의회는 이러한 국제 문서에 관한 국가의 유보가 여전히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는가?
- 국가인권기구가 있는가? 국가인권기구가 있다면, 현재 파리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하는가?



- 국가 입법 체제, 국가 정책 및 관행은 민주적 공간을 충분히 보호하고 시민사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가?
- 의회는 차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 또한 평등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호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가?

### 지난 12개월간:

- 의회는 인권 혹은 지역인권조약 및/또는 국제인권조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법안을 채택하거나 개정한 바 있는가? 이러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다면, 개정안은 채택되었는가?
- 인권조약 및/또는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었는가?
- 의회는 소외집단의 권리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을 검토하거나 채택한 바 있는가?

## 2부: 노력의 영향 돌아보기

- 기존 법률,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국가의 인권 의무에 부합하는지 검토된 바 있는가?
- 국제조약에 명시된 인권 조항이 국내법으로 편입되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국제인권조항이 국내법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얻고, 국제인권조항에 명시된 인권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 의회는 헌법 및 국제법 하의 인권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모든 의원들은 이행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법안이 개정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법안을 검토한 바 있는가?
- 의회는 시민사회를 관할하는 법적 체계가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 법적 체계와 그 이행을 검토한 바 있는가?

## 질문 3: 의회 감시 보장

의회는 감시 기능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과 행동이 인권과 양립하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의회의 감시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의 작위나 부작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권 존중에 관한 구체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의원은 재소자 면회와 같이 진상을 규명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법 후 조사는 관행은 의회에 법률의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행정부가 기존 국제인권조약과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는 이유 또는 국가가 이미 당사국이 된 문서의 유보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할 수 있다. 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채택되고 이행되도록 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제 및 지역인권체제의 권고가 통합되도록 할 수 있다.

### 1부: 기준선 파악하기

- 국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나 전략이 있는가?
- 헌법 혹은 기타 법률에 의회 질문, 대정부 질의, 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회가 실질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고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의회는 기존 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관행이나 규칙을 개발한 바 있는가? 여기에는 특정 소외 집단에 미칠 수도 있는 차별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 아직 당사국이 되지 못한 국제인권조약은 무엇인가? 국가가 이미 당사국인 인권조약의 조항에 관해 유보하겠다고 표현한 조항은 무엇인가?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조약 기구의 최근 최종견해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 지난 12개월간:

- 의회는 최근 행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에 관해 알고 있는가?
- 의회는 본회의에서 인권 성과에 관해 행정부에 충분히 질의했는가?
- 의회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본회의/위원회에서 법안의 이행을 얼마나 자주 검토하였는가?
- 의회는 특정 인권 문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 조사나 진상 규명 임무를 수행하였는가? 그렇다면, 수행한 결과로 얻은 성과/영향은 무엇인가?

## 2부: 노력의 영향 돌아보기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다면, 의회는 그 이행을 감시하고 있는가? 기본 계획이 없다면, 의회는 행정부가 기본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고 있는가?
- 의회 혹은 의회 특별 위원회는 행정부의 구성원(장관, 공무원, 행정부 관리 등)을 소집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가?
- 의회가 기존 법안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기존 법안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규칙이나 관행이 없다면, 그러한 규칙이나 관행의 채택을 방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

- 의회가 국제조약의 비준 혹은 가입을 어느 정도까지 감시하는가?

- 하나 이상의 조약을 비준 혹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의회는 그러한 부작위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 반면 비준이나 가입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면, 의회는 정부가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조항을 두고자 하는지에 관해 통지받았는가?
- 의회는 발효된 조약에 정부가 유보한 조항이 계속 유보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였는가? 그렇다면, 상기 유보조항을 철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유보조항과 관련한 최종견해를 고려하였는가?

## 질문 4: 의회에서 인권의 주류화

의회의 업무는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의회가 인권을 의회 절차, 진행 및 구조의 중심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권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의회 위원회 설립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의회가 인권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뿐 아니라 의회 의제에 인권 주제가 항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위원회는 외부 인권 파트너와 활동에서 의회의 구심점 역할도 하며 의회의 업무 전반에 걸쳐 인권을 주류화 하는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 1부: 기준선 파악하기

- 의회는 자체 구조 안에서 인권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했는가?
  - 의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가? 의회는 인권에 초점을 둔 전담 혹은 우선하는 의회 위원회를 설립하였는가? 의회는 의회내 여러 위원회에 책임을 분담하였는가? 혹은 의회는 위원회에도 아무런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는가?
  - 하나 이상의 의회 기관에서 이런 책임을 맡았다면, 이들은 전체적으로 의회 전반에 걸쳐 인권 관련 업무를 조율하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인권전담 의회 위원회<sup>49</sup>가 있는 경우:

- 위원회의 구성은 다원성, 초당성, 성별 균형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 위원회는 인권 지식이 있는 의원을 포함하는가?
- 위원회는 입법 및 감시 기능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권 권한을 갖는가?
- 의회는 위원회에 충분한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을 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가?
- 위원회는 법안, 기존 법 및 다른 법률이 국가의 국내 및 국제인권의무와의 양립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가?
-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권 현안을 다루고 인권 영역에서 법률 및 기타 안건을 주도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제기된 인권 문제와 우려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가?
- 위원회는 다른 의회 기구에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조언할 권한이 있는가?
- 위원회는 정보를 요청하고 증인에게 질의하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지난 12개월간:*

- 의회는 본회의에서 인권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는가? 의회는 국가인권기구나 다른 인권단체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가?
- 인권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위원회는 어느 곳인가?

---

49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침은 A/HRC/38/25, 별첨 I 참조.

## 2부: 노력의 영향 돌아보기

- 인권을 전담하는 의회 위원회가 있다면, 이 위원회는 1부에 기재된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온전히 행사하였는가? 언급된 권한을 모두 갖지 못한다면, 위원회는 부족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했는가? 위원회가 다원성, 초당성, 성별 균형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있는가? 위원회 구성원이 인권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
- 인권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다면, 의회는 국제 및 지역 권고의 이행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등의 인권 활동을 이끌고 조율을 전담할 상설 위원회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가?
  - 그렇다면, 그러한 위원회의 설립에 관해 내부적으로 협의하였는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가 취한 다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그러한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 의회 인권위원회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는가?
  - 위원회는 이들 단체와 협력 관계인가? 그렇다면, 이들 단체에게 공청회에 참석 및/또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인권 상황에 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 위원회는 이들 집단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어 의회와 의회 위원회 내에서 인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가?



## 질문 5: 유엔인권체제에 의회의 참여 강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절차에 따라 채택한 권고 대부분은 의회의 행동을 요청하거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sup>50</sup> 특별절차 수임자가 작성한 권고뿐만 아니라, 정기검토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해 유엔조약기구가 채택하는 최종권해를 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조약기구의 보고 절차 간에는 중요한 유사성이 있으며, 다음 세 단계를 포함한다. 의회는 유엔인권체제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에 자문을 함으로써, 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대표단에 참여함으로써, 절차의 말미에 유엔인권체제가 수립한 권고를 숙지하고 이행함으로써 이 절차의 각 세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국가가 특별절차 수임자와 협력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에는 특별절차 수임자 초청 과정 감시, 국가 방문 중 수임자와 협력, 개인 통보에 관한 후속조치를 포함한다. 포용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유엔인권체제에 기여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보고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체계(National Mechanisms for Reporting and Follow-up, NMRF)를 구축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의회는 해당 체계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중요하다.

### 1부: 기준선 파악하기

- 의회는 유엔인권체제의 업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켜보고 이러한 업무에 기여하는가?
  - 의회는 국가와 유엔인권기구(예: 의회 인권위원회, 혹은 실무그룹, 인권 관련 단체나 전담팀) 간 협력 상황을 검증하기 위한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 의회는 유엔인권기구의 업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 의회 지원 서비스,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 의회 혹은 관련 위원회(들)는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가?
- 의원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국가보고서를 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 일정을 인지하고 있는가?
- 유엔 특별절차 수임자의 국가 방문 일정에 의회 혹은 관련 위원회 방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의회는 특별절차 수임자가 작성한 보고서 사본을 수신할 체계가 잡혀 있는가? 의회는 특별절차 수임자가 정부에 발송하는 자료의 사본과 자문 요청을 받는가?
- 하나 이상의 유엔인권체제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대표단에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가?
  - 의원이 유엔인권체제의 권고 및 최종견해를 후속조치할 수 있도록 권장받았는가?

### 지난 24개월간.<sup>51</sup>

- 의회는 국제인권체제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초안이나 최종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는가?
- 유엔인권체제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대표단에 포함된 의원은 몇 명인가?

---

51 일반적인 12개월로 하지 않고 24개월로 정한 것은 유엔감독기구의 보고 주기와 맞추기 위함이다.

- 의회는 국제인권체제가 발행한 권고/최종견해를 논의하였는가? 그렇다면, 행정부가 이행 계획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는가?
- 의회는 특별절차 수임자로부터 받은 통보 및 조언 요청을 논의하였는가?

## 2부: 노력의 영향 돌아보기

- 의회는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을 포함해 유엔인권체제의 업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가?
  - 의회는 유엔 특별절차 수임자가 작성한 권고, 특히 해당 국가의 상황을 다루는 권고를 논의할 임시회를 개최했는가? 그렇다면,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는 그러한 회기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는가?
  - 의회는 자국 방문 상시 초청이 유엔 특별절차 수임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했는가? 특별절차 수임자의 방문 요청이 아직 수락되지 않았다면 의회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의회는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의회의 참여에 수반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았는가? 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지났을 때 의회는 행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가? 정부가 보고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데 의회절차를 사용하였는가?
- 의회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절차(검토 이전, 검토 중, 검토 이후)에 기여하였는가?
  - 의회는 행정부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 절차, 대화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는가?

- 의회는 입법 및 예산 조치를 요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를 따랐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추적하였는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를 주제별로 묶은 매트릭스를 활용했는가?
- 의회는 행정부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특히, 수용한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였는가? 또 이 보고서(특히 의회 인권위원회를 통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가?
- 의회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행정부와 (NMRF가 있다면 이를 통해) 열린 대화를 유지하였는가? 또 이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는가?
- 의회는 정부가 국가보고서 작성 시 무엇보다도 지난 검토의 권고 이행 상황에 중점을 두면서 필수적인 첫 단계로 '폭넓은 협의 절차'를 주관할 것을 독려했는가?
- 의회는 행정부가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의 절차를 통해 제출한 자문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독려하였는가?
- 유엔인권체제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대표단에 의원이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는가?

## 질문 6: 인권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간 상승효과 증진

인권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보편적 실현에 내재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전목표의 92퍼센트 이상은 국제인권법규<sup>52</sup>의 구체적 조항을 반영한다. 17개 목표가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려” 하는 것이기에,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통합 접근을 통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이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국제인권권고가 2030 의제의 이행 및 그 반대의 경우에도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sup>53</sup>

### 1부: 기준선 파악하기

- 의원이 2030 의제와 인권 간의 연결고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가?
- 2030 의제 이행을 전담하여 감독하는 의회 위원회가 있는가? 있다면, 다른 의회 위원회(만약 있다면, 인권 전담 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는가?
- 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체계 전반에 관해 인권의 관점에서 토론한 바 있는가? 있다면, 2030 의제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목표에 주의를 기울였는가?

52 덴마크 인권연구소가 제공하는 자료,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지속가능발전목표로의 인권 지침\(The Human Rights Guid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참조.

53 의원들은 또한 SDG와 인권간 연결고리를 IPU의 전용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모색할 수 있다. 국제의회연맹의 ‘[의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자체평가 도구\(Parlia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elf-assessment toolkit\)](#)’(제네바: 국제의회연맹, 2016) 참조.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인권체제 및 지역인권체제의 권고를 다루는 국제 및 지역 세미나/워크숍에 참여하도록 의원을 독려하였는가?

### 지난 12개월간:

- 의회는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연관성에 관해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 있는가?
- 어떤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의를 개최했는가?

## 2부: 노력의 영향 돌아보기

- 의회도서관(혹은 만약 있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전담하는 의회 위원회)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2030 의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의회가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위원회는 공통의 목표와 목표 달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회의를 개최했는가? 이 회의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는가?
- 의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였는가? 이 체계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가?
- 의회는 인권,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국가 이행 노력을 더 잘 조정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 및 지역인권체제의 권고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는가?

## 질문 7: 인권을 위한 재정 지원 확보

의회는 또한 입법 및 감시 역할과 더불어, 국가 예산을 승인할 책임을 갖는다. 국가 예산은 인권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재정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가 국가 예산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제, 지역 및 국내 인권규범과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1부: 기준선 파악하기

- 의회는 의회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최근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가? 같은 맥락에서, 예산 배정을 통해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하고자 하는지 쉽게 파악되는 방식으로 예산안이 작성되는가?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국제인권체제의 권고 이행을 위해 특정 자금을 편성하는가?
- 의회는 인권에 편성된 자금이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지출을 검토하는가? 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지출이 인권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한 의회는 국가의 최고감사기관 (Supreme Audit Institution, SAI) 혹은 그와 유사한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가?
- 의회는 예산 승인에 앞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와 예산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가?

### 지난 12개월간:

- 인권 관련 의회 위원회(들)에서 발간한 보고서 중에서 인권 관련 재정의 편성이나 지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보고서는 얼마나 많은가?

- 의회는 최근 예산안 승인 과정에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잠재적 관계를 다루었는가?

## 2부: 노력의 영향 돌아보기

- 국가 예산을 승인할 때, 의회는 인권 실현을 위한 자금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는가?
  - 의회는 국가인권기구를 포함하여 국가인권기반시설이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 의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보장하고 젠더 평등을 증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가?
  - 의회는 예산이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며 구조적 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 인권 이행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의회 혹은 의회 위원회는 권한을 이용해 이를 바꾸도록 정부의 조치를 요청한 바 있는가?
- 의회는 예산 지출이 국제인권 권고의 이행 증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사하였는가?
- 아직 그렇지 않다면, 의회는 최고감사기관(SAI)의 보고서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
- 의회는 시민이 예산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안 승인에 앞서 적절한 시기에 대중이 핵심 예산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 질문 8: 대중 및 그 밖의 국가 인권 이해관계자와 협력 증진

의회는 선제적으로 대중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은 선출된 대표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대중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사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핵심 인권 권고가 이행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의회는 또한 인권 분야에서 중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 사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예를 들어 인권 전담 위원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는다.

### 1부: 기준선 파악하기

- 의회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예를 들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조약 기구 검토에 앞서) 공개 행사를 조직하는가?
- 의원은 유권자에게 인권 현안을 제기하는가?
-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에 관해 논의하는가?
- 의회는 시민사회 대표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가?

#### 지난 12개월간:

- 인권에 관한 공개 행사가 의회 내에서 혹은 의회에 의해 조직되었는가?
- 인권에 초점을 둔 선거구 방문이 있었는가?

## 2부: 노력의 영향 돌아보기

- 의회는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지원 업무에 관해 대중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 의회는 정기적인 지방, 지역, 국가 캠페인, 워크숍, 세미나 및/혹은 회의를 포함해서 대중에게 인권 현안을 알리기 위한 소통 전략을 채택한 바 있는가?
  - 의회는 대중의 관심을 인권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국제 사회가 매년 12월 10일로 정한 인권의 날을 맞아 대중이 인권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는가? 세계여성의 날이나 국제 장애인의 날 등 또다른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을 맞아 이들 집단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한 바 있는가?
  - 의회 누리집에서 비준된 인권 조약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가?
-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권인식을 제고하였는가?
  - 의원은 인권에 관한 텔레비전 혹은 라디오 토론이나 공개회의에 참여한 바 있는가?
  - 의원은 신문이나 잡지에 인권에 관해 이해하기 쉬운 글을 기고한 바 있는가?
  - 의회 지도부는 의원이 유사한 계획을 세울 것을 독려한 바 있는가?

-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와 체계적으로 협력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의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하는 보고서나 제출물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있는가?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에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이들 보고서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 이루어졌는가?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견해와 권고 중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수용했는가?
- 의회가 인권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어느 정도까지 협력하는가?
  - 의회는 특정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요청한 바 있는가? 여기에는 조직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소외 집단에 대한 지원 활동이 포함되었는가?
  - 의회는 입법을 위한 법안 및 토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등 의회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가?
  - 시민사회 및 일반 대중은 위원회 공청회와 같은 의회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텔레비전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방청할 수 있는가?
  - 시민사회가 서면이나 구두로 특정 의회 위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의회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 참고문헌

## 인권

- 국제의회연맹(IPU)(2014), *의회 지원을 위한 공통 원칙*, 제네바: IPU. [http://archive.ipu.org/pdf/publications/principles\\_en.pdf](http://archive.ipu.org/pdf/publications/principles_en.pdf) 참조.
- 국제의회연맹(IPU)(2016), *의회의 젠더 감수성 평가: 자체평가 도구*. 제네바: IPU. <http://archive.ipu.org/pdf/publications/gender-toolkit-e.pdf> 참조.
- 국제의회연맹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2016),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제네바: IPU.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HandbookParliamentarians.pdf> 참조.
- 유엔 인권이사회(20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 간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원칙*, A/HRC/20/9. <https://undocs.org/en/A/HRC/20/9> 참조.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2015),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제네바: OHCHR.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MDGs/Post2015/TransformingOurWorld.pdf> 참조.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국제예산협의체(IBP)(2017), *정부 예산을 통해 인권 실현하기*, 뉴욕과 제네바: 유엔.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RealizingHRThroughGovernmentBudgets.pdf> 참조.

## 의회와 유엔

- 유엔총회, 국제 협력 증진과 비선택성, 공정 및 객관성의 중요성을 통해 인권 분야에서 유엔의 행동 강화하기, A/72/351. <https://undocs.org/en/A/72/351> 참조.
- 인권이사회, '의회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Pages/Parliaments.aspx> 참조.
- 인권이사회, 유엔인권이사회의 제도형성, 결의 5/1. [https://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RES/5/1](https://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RES/5/1) 참조.
-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 업무와 UPR에 대한 국회의 기여, 결의 35/29. <https://undocs.org/en/A/HRC/RES/35/29> 참조.
- 인권이사회, 인권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이행과 증진, A/HRC/41/25. <https://undocs.org/en/A/HRC/41/25> 참조.
- 인권이사회,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에 관한 2차 포럼, A/HRC/40/65. <https://undocs.org/en/A/HRC/40/65> 참조.
-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 업무와 UPR에 대한 의회의 기여: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보고서, A/HRC/38/25, <https://undocs.org/en/A/HRC/38/25> 참조.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1993년 12월 20일 채택된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statusofnationalinstitutions.aspx> 참조.

##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 국제의회연맹(IPU)(웹사이트): <https://www.ipu.org>
- 국제의회연맹(IPU)(2016), *의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자체평가 도구*, 제네바: IPU. <https://www.ipu.org/file/2549/download> 참조.
- 덴마크인권연구소(웹사이트): <https://sdgdata.humanrights.dk/>



---

## 의회와 인권

자체평가 도구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인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전화 (02)2125-9888 FAX (02)2125-0918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화 (02)2278-1990 FAX (02)2278-1992

---

I S B N 978-92-9142-895-3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971-0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Tel : 02-2125-9888 / FAX: 02-2125-0918 / Web: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ISBN 978-92-9142-895-3